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자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인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청약에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자,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제출을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사업주제 및 시행회사</b>		
구분	사업주제(시행사)	시공사
상 호	엄공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코오롱글로벌(주)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77번길 35(엄공동)	경기도 과천시 코오로동 11 (별양동, 코오롱)
법인등록번호	184471-0003337	110111-0036502

<b>■ 감리자 및 감리구역</b>			
(단위: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감리
회사명	(하)삼우씨엔지니어사무소	(하)세팅이씨	대원포토비즈(주)
감리금액	7,593,143,800	1,202,592,840	1,606,836,000

## 1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구분	특별공공	일반공공 1순위	일반공공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4.06(월)	26.04.07(화)	26.04.08(수)	26.04.14(화)	26.04.16(목)~26.04.22(수)	26.04.27(월)~26.04.29(수)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제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제 견본주택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과평동 544-15)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공은 사업주제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공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일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시, 청약일 상담시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시 사용자별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공공대상 및 공급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권곡로 - 12328호(2026.03.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공동 42번지 일원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36층 13개동 총 1,670세대 중 일반분양 1,061세대(초한 492세대, 임대 100세대 및 보류지 17세대 제외)

(특별공공 576세대(기타주택 10세대, 다자녀가구 106세대, 신혼부부 240세대, 노부모부양 31세대, 생애최초 95세대) 포함 및 부대부속시설

■ 입주시기: 2030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b>■ 공급대상</b>		(단위: m <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특별공공 세대수					일반공공 세대수	최대층 수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074	01	059.0000A	59A1	59.9800	21.8451	81.8251	53.1072	134.9323	31.1189	206	29	29	69	9	27	163	136	12
	59A2	59.9846	21.3412	81.3258	53.1112	134.4370	31.1213	93										6
	02	059.9847B	59B	59.9847	21.8111	81.7958	53.1113	134.9071	31.1213	27	3	3	6	1	2	15	12	1
	03	074.9802A	74A	74.9802	25.9359	100.9161	66.3886	167.3047	38.9013	6	1	1	1	-	-	3	3	1
	04	074.9891B	74B	74.9891	27.1747	102.1638	66.3965	168.5603	38.9059	22	2	2	5	1	2	12	10	1
	05	084.9869A	84A	84.9869	29.5528	114.5397	75.2487	189.7884	44.0930	381	38	38	88	11	35	210	171	19
	06	084.9808B	84B	84.9808	30.0203	115.0011	75.2433	190.2444	44.0898	271	27	27	63	8	26	151	120	9
	07	084.9896C	84C	84.9896	30.4749	115.4645	75.2511	190.7156	44.0944	36	4	4	8	1	3	20	16	2
	08	101.2177B	101B	101.2177	36.2344	137.4521	89.6197	227.0718	52.5139	17	-	-	-	-	-	2	15	3
	09	133.3409	133P	133.3409	49.8969	183.2378	118.0622	301.3000	69.1801	1	-	-	-	-	-	0	1	-
10	155.2873	155P	155.2873	58.9138	214.2011	137.4938	351.6949	80.5663	1	-	-	-	-	-	0	1	-	
			합계						1,061	14	106	240	31	95	576	485	54	

<b>■ 공급금액 표</b>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타입)	59A1	59A2	59B	74A	74B	84A	84B	84C	101B	133P	155P
최저가	450,800,000	451,200,000	427,800,000	575,600,000	531,900,000	622,900,000	596,500,000	621,100,000	800,600,000	1,263,400,000	1,461,600,000
최고가	499,500,000	499,500,000	486,200,000	616,300,000	592,600,000	697,800,000	685,400,000	689,700,000	880,300,000	1,263,400,000	1,461,600,000

※ 특별, 특별, 특별 분양가가 상이하오니, 당사 홈페이지 (https://hanulche-eg.com) 및 입주자모집공고문(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납부일정</b>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잔금
계약시	2026-05-26	2026-12-10	2027-06-10	2027-11-10	2028-05-10	2028-11-10	2029-05-10	입주자정일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중도금/잔금	국민은행	571501-01-379022	엄공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코오롱글로벌(주)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주택용역(우상층)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대신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액(과금)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으므로 발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 101동 1101호 홍길동(예) 경우, 서명에는 "1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처리가 당첨되지 상이하오니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오입금) 및 계좌오입금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인은 재발문에 대하여 사업주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서는 계약(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입급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신용등급을 일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급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3 특별공공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공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공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다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제2항 (혼인특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공 횟수 제한)이 있다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공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제4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공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공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충족할 것 - 2. 공공분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 호를 사업주제에게 제출할 것 - 3. 공공분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공(공공주택 제외) 주택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신청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공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공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유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유 여부는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공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공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공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작어 의해 특례를 사용한 청약자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있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공에 당첨된 분은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공 횟수 제한(예외) ※ 특별공공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처리방법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공별 신청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공 횟수 제한(예외) ※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공 유효행렬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공 횟수 제한(예외) ※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분	
	구분	특례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공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 기관추천 특별공공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는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다세대주택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공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정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제 및 주택계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공 확정대상자 예외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제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공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공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공 예외대상자는 특별공공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공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주택 우선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외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공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방산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인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배경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해당지역 거주(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공 우선순위 배정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

### ■ 신혼부부 특별공공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24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공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공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공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공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공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공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분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 노부모부양 특별공공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명 이상 계속하여 부양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가제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공 신청 시에는 입주자처속 가입기간 점수 신청 시 배우자 입주자처속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순위(신일일) 기준으로 함 - 입주자처속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처속에서 중합처속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가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 생애최초 특별공공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9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에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 아닌 형태(재미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공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	---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공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공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공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공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공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태제대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예금)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청약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례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특례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